

전자서명수단 지정서

다음의 전자서명수단을 「후견등기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 제32조의2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인증서로 한다.

1. 지정 전자서명수단

아래 5개 기관이 발급한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

- ① 한국정보인증 (<https://www.signgate.com>)
- ② 코스콤 (<https://www.koscom.co.kr>)
- ③ 한국전자인증 (<https://www.crosscert.com>)
- ④ 한국무역정보통신 (<https://www.tradesign.net>)
- ⑤ 금융결제원 (<https://www.yesign.or.kr>)

2. 지정 후 공고 방식: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웹 사이트를 통한 게시

3. 시행 시기: 2021. 6. 10.

법 원 행 정 처 장